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A Study on EC and Taxtion Problems

조석홍*. 방준석**

목 차

- | | |
|------------------|--------------------|
| I. 서론 | IV. 전자상거래 과세의 국제동향 |
| II.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 V. 우리나라 향후 과세방향 |
| III.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 | VI. 결론 |

Key Words : E-commerce, Tax, Taxation, Tariffs, Non-Tariffs.

Abstract

E-commerce is now a familiar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 especially in the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This online transaction poses a good deal of problems to the traditional tax system and administration. Realignment of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the e-commerce is one of the major topics on the International problem.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In the area of consumption tax, they reaffirmed the destination principle. They agreed to decide the recipient's business presence and usual residence as the place of consumption.

Currently, the Korean VAT law does not have a basis for taxation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vices. Considering the tax revenue loss and the inequality between domestic suppliers and foreign suppliers whe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not taxed, the Korean Tax Authority needs to amend the current law.

* 강남대학교 겸임교수, 경제학 박사

** 호서대학교, 경제학 박사

I. 서 론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기존의 법·제도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각국간 핵심적 쟁점은 과세문제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공간적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들어 전자상거래를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주장과 이러한 미국의 주장은 곧 선두기업들이 선점에서 오는 우월적 경쟁력을 중심으로 각국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붕괴시킬 음모라고 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간의 전략적 고려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세제 및 조세 행정에 있어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1996년부터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들의 과세당국에서 국제적인 논의와 병행하여 나름대로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세제개편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자국의 이익 확보차원에서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아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고자 다자 및 양자간 협상을 제의하고 있다. 한편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가 핵심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향후 다자간 협상의 도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인터넷 교역이 급증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차세대 세원으로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이에 미리 무관세로 째기를 박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뒤쳐있는 까닭에 적극적인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과세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과세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1. 국제기구

가. WTO

WTO 전자상거래 논의의 시발점은 1998년 2월 미국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인터넷 online 제품에 대한 무관세의 국제규범화(codification)를 제안하면서부터이다. 1998년 5월 18일부터 20일간 개최된 WTO 제2차 각료 회의에서 “세계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³⁾ 이후 그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WTO가 가지는 강제적 특성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접근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⁴⁾

특히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이슈(관세부과 포함) 및 회원

1) WTO, 「Special Studies 2 :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2) WTO, General Council,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30 September 1998, (http://www.wto.org/ecom/e_274.doc.)

국들의 제한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였으며 관세가 어떻게 서비스에 부과될 수 있는지, 또 관세가 어떻게 전자적 전송물에 부과될 수 있는지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상품분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현재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어도 이를 영구화하는 것에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반대가 있었다.

나. OECD

OECD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원칙의 수립과 전자상거래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 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초기의 OECD에서의 논의는 개인정보보호와 국가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무역, 시장접근, 중소기업, 조세 등 국제경제 활동 측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정보통신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기술적 인프라 등 세 가지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고 ① 정보통신 인프라는 다시 유선통신망, CATV망, TV, 무선통신, 위성통신 등 인터넷 기반시설, ② 사회적 인프라는 다시 개인정보보호, 시장접근, 정보이용가격, 조세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공정책, 법률 및 제도, 그리고 ③ 기술적 인프라는 네트워크내의 기술적 표준과 보안, 인증, 대금결제

등을 그 논의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 관련법들에 대한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국제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국가의 관련 법률의 부적절한 내용이나 차이로 야기되는 국제거래상의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UN총회에 의하여 1966년 12월 17일에 창설되었다. WTO 등이 각국의 통상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세계 자유무역을 달성시키려는 것과는 달리 UNCITRAL은 순수하게 국제거래를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주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⁵⁾

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특성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법적 체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통적인 법적 체제는 주권과 영토성의 개념을 기초로 한다. 반면 인터넷은 영토적인 경계에 기초한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특히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및 상표권 등은 새로운 쟁점들에 직면해 있다. 전자상거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오늘날 논의의 쟁점이 되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WIPO⁶⁾를 통하여 이루

5) <http://www.un.or.at/uncitral> 참조.

6) 스위스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가 있다. WIPO의 목적은 ①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② 제 동맹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함에 있다. WIPO 설립조약은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체결되었고, 1970.4월 발효하였다. WIPO는 19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그 국제사무국은 제네바에 있다. 우리 나라는 1979.3.1일 WIPO 설립조약에 가입하였다. 현재(2000.1.1.) 가입국은 171개국이다.: 송영식 · 이상정. 지적재산권, 세창출판사, 2000.3. p.5. 참조.

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WIPO의 역할은 1998년 9월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WIPO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WIPO Digital Agenda⁷⁾에 잘 나타나 있다. 동 의제는 지적재산권 정보에의 접근, 세계 정책형성에 참여, 전자상거래에서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기회 등에 있어 개도국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구조의 조정을 추진하며, WIPO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WIPO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 APEC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APEC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측정 방법(Measurement of Electronic Commerce), 무역자동화(Paperless Trading),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전자상거래와 법(Electronic Commerce and the Law), 조기 경보(Readiness Indicators),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기구 논의동향 등이며, 이 가운데 특히 소비자 보호, 상호인증 등 법적 환경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주요국 동향

가. 미국

1997년 세계 전자상거래 골격은 전자상거래에 완전한 무관세를 구현하여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신설하

〈표 1〉 국제기구 논의분야

구 분	지원	무역	조세	전자 서명	지적 재산	표준	보안	프라이 버시	소비자 보호	컨텐츠	교육
OECD			○	○			○	○	○		○
UNCITRAL					○						○
WTO		○									
WIPO					○						
APEC			○						○	○	○

자료: 조석홍, E-비즈니스법률과 윤리, 도서출판 두남, 2002.8

제고방안, ② 통신인프라 관련, ③ 관세 등 정부 규제 관련, ④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및 그 역할분담, ⑤ 물류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작업반(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전자상거래

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미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및 관세 부과의 특징은 일관되게 무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조세 분야에 있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8년 10월 시행된 ‘인터넷면세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관세 분야에 있어 미국은 1998년 2월 6일 전자상

7) <http://ecommerce.wipo.int/agenda/index.html>

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WTO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미국은 WTO 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EU

EU에서의 전자상거래와 조세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간접세 비중이 큰 특성상 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검토되었다. 2000년 6월 7일 유럽위원회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1977년 'VAT지침수정 제안에서 행정적 협력에 대한 1992년 규칙'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였다. 동 제안은 EU연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구매가 EU연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세의 문제에 있어서 EU는 주문, 결제, 배달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유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 일본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경제거래가 복잡화 국제화될수록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공평 중립 간소해야 하며 국제적 정합성 (整合性)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산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연장하였으나, 동시에 앞으로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III. 전자상거래 과세 문제

1.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

전자상거래에서의 조세는 관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등이 문제된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에서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현재의 조세문제의 접근방법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OECD, 미국 등에서 전자상거래와 국제조세에 관한 논의는 전자상거래가 탈국경화됨으로써 국가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국제조세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방식인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을 출발점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국제조세의 체계에 전자상거래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당면한 과제이다. 미국은 재무성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전통적인 거래와 구별하지 않고 조세의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⁸⁾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과세방법과 전자상거래의 과세간의 큰 차이는 전자가 납세의무자의 거주지 및 소득발생 장소인 물리적인 장소를 주요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는 거래에 따라서 이익을 취득한 기업의 거주지(국)에서 종래와 같이 과세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국 법인과세(비 거주자과세)는 영구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PE'라고 한다)의 존재 및 국내 원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곤란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전자상거래의 특

8) U. S. Treasury Office of Tax Policy, para. 3. 2., pp.2-3.

성인 원격지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거래인 점, 인터넷의 서버 등 설비의 가동성에 있다. 따라서 원천지국이 과세포기의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은 그 이전하는 물건의 형태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지만, 전자상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온라인에 의한 이전, 유형적인 자기 매체 등에 의한 이전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과세상 그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과세대상물품의 종류

대부분의 조세관련 법률에서는 거래의 유형을 유형의 물품과 특허권, 서비스와 같은 무형물품으로 구분하여 세제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거래종류의 규정에 따라 소득원천, 원천징수의 적용여부, 소득유형의 결정, 관세의 적용여부 등 해석이 상이하다. 통상 물품이 한 국가에 수입될 때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물품의 판매회사가 수입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원천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의 대가지급은 서비스가 외국기업에 의해 제공될 경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물품을 유형(Material)과 무형(Dematerial)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형의 물품

일반적으로 통신판매 이외의 국내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시 부가세 또는 소비세를 징수한 후 이를 과세당국에 납부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에 관한 간접세 부과는 미국과 유럽이 상반

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신판매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며 EU지역의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에도 응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통신판매회사에 대해서는 소재지의 소비세를 면세하여 통신판매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소비세의 누수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물품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 판매되더라도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인도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의 징수는 현재의 조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의 물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조세부과 여부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다만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시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방법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의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판매자 및 소비자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납세를 대행하는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전하고 있다⁹⁾.

나. 무형의 물품

특허권이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물품에 대한 과세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으로만 거래되고 실물의 이동이 없는 서비스 및 무형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주장하는 반면 유럽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이 법인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OECD회원국은 세입의 18%를 부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¹⁰⁾.

또한 인터넷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과세여부도 미국과 유럽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비유럽국가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새

9) OECD, 1997,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s

10) The Wall Street Journal, 1997. 7, European Nations, U.S. Differ on How to Set Rules for Net

로운 부가세 조항을 1997년에 삽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의 Microsoft, America Online, Compuserve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론 및 출판사와의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의하였다¹¹⁾. 심지어 미국은 기존의 일부 주정부에서 인터넷 사용료에 부과하던 통신 소비세도 철폐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순수히 화면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무형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현재의 기술로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EU에서는 Bit Tax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 거래에 관하여는 세율이 낮은 지역인 조세피난처(Tax Heaven)¹²⁾에 대한 특별조항의 삽입을 주장하고 있다¹³⁾.

3. 소득원천 및 고정사업장

이미 기술한 거래유형은 경제행위에서 발생된 소득원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소득원천의 문제는 한 국가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의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편 1992년 OECD의 소득세 모델협약에서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정보서비스 및 데이터베이

스 제공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존재유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결국 컴퓨터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는 각국의 과세당국과 법원의 해석결과에 따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세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적 협의가 요구된다.

IV. 전자상거래 과세의 국제동향

1. 조세의 국제동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가상기업 및 가상공간 내 거래에 대한 관할권, 조세회피 및 포탈 등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무형재화에 대한 조세부과가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Ottawa 각료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비회원국 및 민간업계 대표들은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조세기본틀조건”(Taxation Framework Conditions)을 환영하면서, 실물 재화의 국경간 이동에 관하여는 “세계관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문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의함에 따라 OECD 재정위원회는 현재의 기술적, 상업적 환경을 고려할 때 통상 거래에 적용되는 5가지 조세원칙이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¹⁴⁾

11) Financial Times, 1996. 11, Telecom services : US providers lose advantage

12) 조세피난처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등 과세상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 조세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상 혜택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자유와 금융의 비밀보장 등 국제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13) EC, 1997, Building the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for Us All

14) OECD,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1998.10.8. :<http://www.oecd.org//daf/FSM/ecomfrwrdconden.html> 참조.OECD, Electronic

〈표 2〉 OECD 재정위원회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5가지 조세원칙

중립성 (neutrality)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또는 전자상거래 상호간 조세취급이 중립적·공평해야 하고, 사업결정은 세금보다는 경제적 고려에서 행해져야 하며, 유사한 거래를 행하면서 유사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의 과세는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효율성 (efficiency)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
명확·단순성 (certainty and simplicity)	조세원칙은 언제, 어디서, 얼마큼의 과세가 될지를 포함하여,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단순·분명해야 한다.
효과·공평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탈세·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또한 공정해야 한다.
융통성 (flexibility)	과세규정도 기술·산업 발전에 탄력·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조석홍. E-비즈니스법률과 윤리, 도서출판 두남 2002.8

〈표 3〉 OECD의 징세방안 및 장·단점

징세방안	장점	단점	비고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B2B거래시 실행가능성이 높으며, 징세비용도 최소화. 공급자 납세협력비용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B2C거래에서 개인의 납세 협력비율이 낮다. 	
비거주자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진납부가 어려운 B2C거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비거주자의 등록을 강제하기 곤란. 비거주 공급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킴. 과세당국의 징수비용도 증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공급자에게는 등록면제를 통하여 협력유도.
공급지과세와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당국의 거주기업자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의무부과가 효과적이며, 납세협력비용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나라를 위한 세금징수 유인이 적다. 공급자가 징세의무가 없는 비협정국에 위치한 경우, 세수유실. 징세비용 증가 	세수배분을 위한 과세당국간의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적.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징세방안이 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협력비용이 크다. 도입초기에는 징세비용도 클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수수료)이 필요.

자료 : 조석홍. E-비즈니스법률과 윤리, 도서출판 두남 2002.8

미국에서는 1997년 글로벌전자상거래기본계획은 전자상거래에 완전한 무관세를 구현하여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신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및 관세 부과의 특징은 일관되게 무관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조세 분야에 있어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8년 10월 시행된 “인터넷 면세법”¹⁵⁾에 구체화되어 있다.

그밖에 “인터넷 비차별법”¹⁶⁾, “인터넷접속료금지법”¹⁷⁾, “전화소비세폐지법”¹⁸⁾ 등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2. 주요국의 조세정책방향

가. 미국의 조세정책

미국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조세는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왜곡시키거나 저해하지 않는 조세이어야 한다. 거래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나 거래본질 및 장소를 변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는 조세제도는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단순하고 투명한 조세제도이어야 한다. 모든 상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여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적용이 용이하고 기장의 어려움이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세제도이어야 한다.

셋째 미국과 관련된 무역대상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조세제도와 조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거래당사자의 잠재적 익명성, 다양한 소규모 거래형태, 물리적 장소와 온라인 거래행위의 불일치성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제도의 확립은 상기한 원칙을 고수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존의 조세개념과 원칙을 재정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재무성을 통하여 OECD의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주정부 및 지방세정당국의 변화가 능성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부조화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국제조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 즉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지방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조세가 전자상거래에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가능

15) 1998년 인터넷면세법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신규 조세 및 차별적 조세를 3년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기존의 원격판매에 적용되는 과세 원칙을 인터넷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P.L. 105-277, 1998.10.21. 참조.

16) 미국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미 하원은 2000년 5월 10일 동 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2001년 만료되는 인터넷면세법에서 규정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3년간의 과세유예기간을 2006년 10월 21일까지 추가적으로 5년간 연장하여, 또한 1998년 10월 1일 11개 주에서 인터넷면세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신설된 인터넷 접속료 징수에 관한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도 함께 폐기하였다. 따라서 동 법에 따라 인터넷 접속료에 대한 주정부의 과세는 금지된다.: 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of 2000, H.R. 3709, 2000.5.10. 참조.

17)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인터넷 접속의 요금과 관련하여 미 하원은 2000년 5월 16일 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부가요금징수를 금지하는 동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 법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에게 인터넷접근서비스에 사용된 시간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nternet Access Charge Prohibition Act of 2000, H.R. 1291, 2000.5.16. 참조.

18) 미 하원은 2000년 5월 25일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세 폐지를 위한 1986년 내국세법의 수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 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3%의 전화특별소비세가 휴대폰과 팩스 및 컴퓨터 모뎀에 연결되는 라인을 포함하여 2억5천2백만개 회선으로 추정되는 전화회선에 부과되고 있는데, 동 법은 2002년 10월 1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기존의 전화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repeal the excise tax on telephone and other communication services, H.R. 3916, 2000.5.25. 참조.

한 한 기존의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통일적이고 용이한 접근방법의 개발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유럽의 조세정책

EU에서의 전자상거래와 조세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간접세 비중이 큰 특성상 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검토는 회원국간 부가가치세의 공동체제에 관한 1977년 VAT지침¹⁹⁾을 기초로 발전하여 왔다. 1977년 VAT지침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한편 1998년 6월 유럽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간접세에 관한 통신”²⁰⁾을 채택하여 EU 각 기관에 전달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동 통신에서 1997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 촉진에서 명확하고 중립적인 조세환경을 보장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EU는 전자상거래의 충분한 발전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체제의 법적 확실성, 간소함,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2000년 6월 7일 유럽위원회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VAT지침 수정제안에서의 행정적 협력에 대한 1992년 규칙”을 수정하는 제안을 하였다.²¹⁾

또 유럽은 독일 본선언에서 비차별적인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인 확실성을 제공하는 조세제도와 함께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조세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부가가치세는 전통적인 방법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으나 웹 사이트의 특징인 무과세지역 또는 과세완화 지역으로의 지역적 유동성을 고려하여 부가세와 소비세 부과에 있어서 상호조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비트세에 대하여 새로운 조세도입을 지양하고 사업에 대한 확신감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발표를 주장하였다.

3. 관세의 국제동향

관세 분야에 있어 미국은 1998년 2월 6일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후 미국은 WTO 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와 관세의 문제에 있어서 EU는 주문, 결제, 배달이 모두 인터넷으로 이루어

19) EU의 부가가치세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공동체제에 관한 1977년 VAT지침은 총 19개 절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중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제6절로서 세금 부과를 위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규정하는 부분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Sixth Council Directive 77/388/EEC of 17 May 1977 on the Harmoniz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urnover Taxes—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uniform basis of assessment, OJ L 145, 1977.6.13. 참조.

20) 1998년 유럽위원회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된 1998년 간접세 통신은 모든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기업 및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간접세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 Communication by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OM(98)374final, 1998.6.17. 참조.

21) 동 제안은 EU연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구매가 EU연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EEC)No.218/92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irect taxation(VAT)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certain services supplied by eletronic means, COM(2000)347final, 2000.6.7. 참조.

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유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국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²²⁾

on-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의 제품(digital product)수입은 WTO에서 무관세화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어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반면, off-line 전자상거래를 통한 CD, DV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수입은 우편이나 항공, 선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것으로 일반수입물품과 같이 관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도 물리적인 운송을 필요로 하는 유형의 상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상의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에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2001년 중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동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재경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7조(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²³⁾ 등 세계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및 관세문제는 각 국의 세수확보와 결부되어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특히 전자적으로 주문·전송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는 “지리적 이동선”(geographic lines of transit)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 및 관리상의 문제로 현재 관세 및 조세의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통신판매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나, 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며, 그 과정 또한 암호화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 및 거래 추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미국은 1997년 “글로벌전자상거래기본계획” 발표 이후 일관되게 무관세·무조세를 주장하고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규정하고 영구적인 무관세·무조세에 대한 범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⁴⁾ 반면 EU는 디지털제품의 잠정적인 무관세·무조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 방침을 영구화하는데는 신중한 입장에 있다. 한편, 조세 및 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조세 및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무관세 및 무조세화의 원칙이 파기될

22) <http://www.customs.go.kr/> 참조.

23) 법률 제6480호 일부개정 2001. 05. 24. 동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종과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최근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무관세화와 무조세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개별국가 과세당국간의 효율적인 협조가 요구될 것이다.

4.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문제를 최초로 논의한 국가는 미국으로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리적인 상품교역의 운송채널이 기존방식과는 상이하여 관세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무관세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WTO등 무역기관을 통하여 유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교역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또는 관세부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으로 주문된 상품이 우편방식에 의하여 인도될 경우 무관세지대에 포함이 불가능하고 상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무관세화가 우편방식에 의한 제품인도에 포함되면 동일한 제품의 국내공급자

와 인터넷 공급자간의 커다란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무관세화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재화 및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음반, 서적, 비디오와 같은 디지털상품이 온라인으로 거래되어 재화가 아닌 용역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부가세라는 세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EU역내 국가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음반이 상품의 형태로 수입될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인터넷으로 전송될 경우 관세부과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형재화의 교역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무관세화에 잠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영상, 음악 등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전송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관세부과항목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 4〉 온라인 거래시 과세 부과 현황

무관세대상	현행 수입형태	관세부과여부	
		현행 거래	인터넷 거래
디지털신호 형태 - 컴퓨터 S/W - 전자출판물 - 게임 S/W	디스크에 수록	디스크 내용물을 구분하여 관세부과 세율은 무세(0%)	무관세
	인공위성 전송	무관세	무관세
영 화	필름등에 수록	내용물에 관계없이 외형에만 부과 종량세 2,040원/m	무관세
음 악	음반에 수록	음반과 내용물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 8%	무관세

자료 : 산업자원부, 1997,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V. 우리나라 향후 과세 방향

1. 전자상거래와 국내 과세 문제

가. 원천지국가의 과세

현재 국제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의 거주지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사업상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그 국가를 원천지국이라고 한다. 각국의 국내법 및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으로 지점 등의 영업지의 일정한 영구시설을 가진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그 나라에서의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성은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관해서 원천지국의 과세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개인 또는 법인의 거주지국은 종래와 같이 국외 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에서의 소득을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판매자가 되는 미국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법인에게 판매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인 원천지국도 세원이 감소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나. 조세회피와 조세피난처(Tax Heaven)

조세피난처(Tax Heaven)국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행하기 위해서 세금이 없는 조세피난처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곳을 본점으로 정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는 향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⁵⁾ 즉 Tax Heaven의 세제대책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의 주식을 소유하는 특정 외국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이익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또한 적용제외의 규정도 있다.²⁶⁾

다. 가상공간의 세원의 소멸현상

전자상거래는 국외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정보 등의 이전이 세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직접 컴퓨터간의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자상거래도 상품 등을 국외로부터 구입하는 통신판매이고, 현재의 우편·전화·팩시밀리 등에 의한 주문방식을 컴퓨터가 대체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외로부터 상품이 통관할 때에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기술 및 현행 세법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곤란하다고 본다. 결국 처음에 과세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소비세(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곤란해서 전체적으로 당해 세목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세원이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조세 및 관세 논의 동향

전자상거래의 환경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조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입법조치된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재화의 국제 경쟁력 미흡으로 이에 따른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이다. 특히, 관세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준 설정이라든가 부과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이다.²⁷⁾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청은 전자상거

25)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세계 35개 가량의 Tax Heaven 국가들이 면세제도를 철폐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OECD에서 이를 강력히 철폐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26)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지배지주의(管理支配地主義) 등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27) 이광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역 관련 조세제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2001. 12.

래를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⁸⁾ 이는 다시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 운송과정을 거치는 off-line거래와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적 대책으로 산업자원부는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

사용이 편리한 통신수단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안전성의 면에서 타인이 명의도용하여 거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고유의 편의성은 반대로 안전한 거래규범의 확립, 분쟁 발생의 대응, 결제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서 향후 국제적인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수단과 기술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 거래를 의미한다. 그러

〈표 5〉 한국과 타국가의 직간접세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직접세%	44.4	92.1	65.3	54.7	46	55.4	39.2
간접세%	55.6	7.9	34.7	45.3	54	44.6	60.8

자료: 조석홍, E-비즈니스법률과 윤리, 도서출판 두남, 2002.8

서 세액공제하고, 바코드를 이용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만큼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 및 관세 관련 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제적 논의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현재의 쟁점사항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세법개정 등의 대응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⁹⁾

3. 해결과제

가. 당면과제

인터넷은 개인 또는 소사업자의 입장에서 대규모 설비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나 구체적인 거래내용으로는 상품판매, 컴퓨터·소프트웨어, 화상, 정보, 건강검진,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화상회의, 인터넷 도박, 사이버 주식거래, 인터넷 금융거래의 글로벌화, 해킹 등이 있다. 특히 정보서비스분야에서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을 잘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화폐가 중시되고 있는데, 현재 약 70개 정도의 전자화폐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다. 미국 재무성은 전자화폐의 경우 카지노 칩이 그 예가 되지만, 현재는 몬텍스가 영국 및 홍콩 등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향후 전자머니의 법적 성격은 발행주체의 범위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 금융업에서 전자결제, 전자신용결제 등이 발행, 실시단계에 이르고 있다.

28) <http://www.customs.go.kr>

29)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1999. 4.

무엇보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각종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거래상의 분쟁해결 등이 과제이다. 나아가 현재보다 인터넷 기반정비가 진척되고 기술진보가 예측되기 때문에 현행 법제도의 규범에 대한 국내조정과 국제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장기 과제

급속히 확대되는 전자상거래의 영역에 대한 과세문제에 관하여 세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 이들은 첫째는 현행 세법의 적용에 관한 검토이다. 둘째는 새로운 형태의 세목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전자상거래가 한 국가 또는 현행 두 국가간 조세조약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인세·소득세 및 소비세의 과세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를 대처하기 위한 개별 세목은 각기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변경하여야 하지만, 그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국가간의 협조와 관련하여서 전자상거래는 과세 또는 면세의 어느 것이든지 그 거래상태에서 세계 각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행 두 나라간 조세조약과 같은 형태로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세제를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경우에,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된다. 이는 전자상거래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거래를 전통적인 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현행 세제에 의해서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것은 납세의무자를 공하게 취급하는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현행 세제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형태의 세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현행 세제의 결함(loophole)을 보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현

행 세제를 보정(補正)하는 것인지, 혹은 증세(增稅)를 의도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논의가 아직 없다. 새로운 세제의 목적이 현행 세제의 보정일지라도,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증세에 대한 불안과 재정당국의 세수증대에 대해서 세율인하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세제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가상공간상의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증세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VII. 결 론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를 따지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제적인 논의동향의 추세는 무관세화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미국과 전반적인 소비세의 과세를 주장하는 유럽 및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은 WTO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역내로 구입되는 전자상거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의 독주에 대한 EU의 견제노력은 각국의 비준을 거쳐 과세주의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모든 전자상거래에 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관세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 한해 과세하고 있는 생산지과세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활동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에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

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직은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기존의 세제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성급한 세법의 정비가 오히려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른 상황전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제정비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기

술의 수입국, 원천지국, 소비지국의 입장에 주로 서게 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럽이나 일본과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적으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그 영향을 받는 우리 세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원 관리 방안 및 조세행정상의 응용 등을 강구함으로써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권순국 외, 인터넷 비즈니스모델과 관련된 특허분쟁사례, 논문집 제6집, 경북외국어대학교, 2000, 12.
2. 권오경, 전자상거래와 물류부문 대응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98.
3. _____, “제3자 물류 : 정의, 적용추이와 향후 연구방향”, 98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1998.
4. 김범열, e-비즈니스의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들, 주간경제 633호, LG경제연구원, 2001. 7.
5. 김재문,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의 수익성을 진단한다, 주간경제 569호, LG경제연구원, 2000. 5.
6. 김현식, 인터넷 시대의 4P, 주간경제 546호, LG경제연구원, 1999. 11.
7. 김형택 · 민옥길, 효과적인 인터넷 마케팅 을 위한 웹로그 분석, 비비컴, 2001.

8. 박용찬, e-비즈니스 파워, 시그마인사이트, 2000.
9. 송지희, 인터넷에서의 가격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4.
10. 서기만, e-business 전략계획 : 주요 이슈와 사례, LG경제연구원, 2000. 5.
11. 심상렬 · 정재윤, 전자상거래 기획, 에듀넷, 2000.
12. 이광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역 관련 조세제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2001.
13. 이기정, 기업의 e-비즈니스 대응전략, eBizner Report <30호>, 전경련, 2001, 12.
14.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와 표준 프로파일 작성 지침, 2001.
15. 정재윤, 정재윤@이메일마케팅.com, 비비컴, 2001.
16. 조석홍, E-비즈니스법률과 윤리, 도서출판 두남, 200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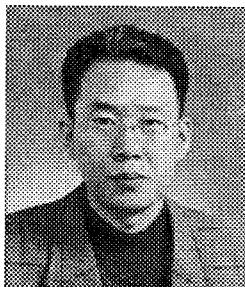
17. 한국전자상거래연구소 e-비즈니스연구위원회,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쓰리엠 테크, 2001.
18. 한경 e-비즈니스본부, *e-비즈니스 어디까지 왔나*, 한국경제신문, 2000.
19. 권종우·이지석, 「통상과정책과 e-비지니스」, 도서출판 두남, 2002.3.
20. 민승규, 「정보화 시대의 적응전략」, 삼성 경제연구소 2000.
21. 통산산업부, 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통산산업부.
22. OECD, 1997.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s and Firms」, DSTI/ICCP/IE(97)3.
23. OECD, 199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C(97)62/FINAL.
24. OECD, 1997. 「Business-to-consumer electronic commerce」, DSTI/ICCP/IE(97)1/REV1.
25. WTO/OECD/APEC/재경부 사이트 등.

저자약력



조석홍 (Seok Hong Jo)

- 국민대학교 경제학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교수
- 한국관세학회, 정보통상학회, 문화무역학회 이사
- 저서 「국제통상론」 외 다수
- e-mail : cho6821@icu.ac.kr



방준석 (Jun Suk Bang)

- 국민대학교 경제학박사
- 현재 호서대학교 근무
- 관심분야 : 디지털산업정책
- e-mail : Bangjs@office.hoseo.ac.kr